



## 세무평론

중국세무

###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증치세 개혁 신규내용을 발표함

중국 국무원은 2013 년 12 월 4 일에 철도운수 및 우편 서비스를 증치세 개혁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어서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12 월 13 일에 새로운 증치세 개혁 규정(즉 2013 년 106 호 문건, 약칭 “106 호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106 호 문건의 일부 조항은 소급되어 적용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106 호 문건이 이전 증치세 개혁 정책이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을 때 당국이 발표한 기존 문건 (즉 2013 년 37 호 문건, 약칭 “37 호 문건”)을 대체할 예정입니다<sup>1</sup>. 37 호 문건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지만 문건의 대부분 내용이 계속 106 호 문건에 반영될 것입니다. 본 평론은 주로 106 호 문건의 현행 정책에 관한 일부 조정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106 호 문건은 철도운수 및 우편 서비스를 증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 11%의 세율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배서비스” 라는 2 급 과세 조목을 신규하여 6%의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106 호 문건의 현행 정책에 대한 조정은 용자임대, 국제화물운수 대리 서비스 등 영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6 호 문건 요약

### 용자임대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는 용자임대기업이<sup>2</sup> 유형동산 용자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취하는 전부 가격 및 관련된 부가 비용을 기초로 하여 일부 사항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인정하여 증치세를 계산 징수해야 합니다. 106 호 문건이 37 호 문건에 제시된 공제 가능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을

<sup>1</sup>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2013 년 6 월 3 일 딜로이트 세무 평론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deloitte.com/assets/Dcom-China/Local%20Assets/Documents/Services/Tax/Tax\\_analysis\\_2013/cn\(zh-cn\)\\_tax\\_tap1832013Chi\\_030613\\_new.pdf](http://www.deloitte.com/assets/Dcom-China/Local%20Assets/Documents/Services/Tax/Tax_analysis_2013/cn(zh-cn)_tax_tap1832013Chi_030613_new.pdf)

<sup>2</sup>조건에 부합하는 용자임대기업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 혹은 국가 상무부에서 승인을 받아 용자임대 용역을 종사하는 시험 납세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수권을 취득한 성급 상무주관부문과 국가경제개발구정부의 승인을 받아 용자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자본금이 1.7 억원 인민폐에 달하는 시험 납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했고 이는 2013년 8월 1일로 소급하여 유효합니다:

공제 사항		
106 호 문건 <sup>3</sup>		37 호 문건
용자적 매각후 임차 용역 <sup>4</sup>	기타 용자 임대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에게서 수취하는 유형동산 가격(임차인이 발급한 영수증을 근거로 함)</li> <li>• 대외 지불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외환 차입금 및 인민폐 차입금 포함)</li> <li>•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지불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외환 차입금 및 인민폐 차입금 포함)</li> <li>•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li> <li>• 보험 비용</li> <li>• 설치 비용</li> <li>• 차량구입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인 부담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외환 차입금 및 인민폐 차입금 포함)</li> <li>• 관세</li> <li>• 수입시 징수하는 소비세</li> <li>• 보험 비용</li> <li>• 설치 비용</li> </ul>

106 호 문건은 납세의무자가 용자적 매각후 임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서 수취하는 유형동산 가격에 대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보통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용자임대일반납세의무자는 증치세 실제 조세부담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 후 즉시 환급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 조세부담은 실제 세액이 전체 가격 및 가외비용 합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106 호 문건은 해당 정책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시간적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 딜로이트의 의견

국세총국이 발표한 2010년 제 13호 문건에 의하면 용자적 매각후 임차 업무중 임차인이 대출인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거래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출인에게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급이 금지됩니다. 한편 대출인인 용자임대기업은 전부 임대금(원금 및 이자 모두 포함)에 대해 17%의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 자산 가격(즉 원금)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세무 실무 처리는 용자임대업 영역에서 큰 논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용자적 매각후 임차 용역은 실질적으로 용자 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을 증치세 과세 기초에 포함시키는 것은 용자임대 용역의 증치세 조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에 106 호 문건은 이러한 논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원금을 과세 기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했고 따라서 용자임대 영역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p>3</sup>상무주관부문과 국가경제개발구정부의 비준을 받아 용자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시험 납세자는 2013년 12월 31일 전에 등록자본금이 1.7억 원 인민폐에 달하는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106 호 문건에서 언급된 공제 규정이 실시될 것이고 아니면 등록자본금이 기준에 부합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sup>4</sup>용자적 매각후 임대란 임차인이 용자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자산을 용자임대기업에게 판매한 후 다시 해당 자산을 임대하는 업무입니다.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37 호 문건에서 언급된 일부 공제 사항(예를 들어 관세, 수입 절차의 소비세 등)은 계속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106 호 문건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자적 매각후 임차 용역에 관한 영수증 발급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적인 실무 적용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 화물 운수 서비스

106 호 문건에 의해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용역을 종사하는 일반납세의무자들이 수취하는 전체 가격 및 부가 비용에서 국제 운수 기업에게 지불하는 국제 운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금을 판매액으로 확정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06 호 문건은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납세의무자들에게 증치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면세 혜택 정책에 부합하는 납세자가 위탁자에게서 수취하는 국제 운수 대리 영역 수입과 국제 운송인에게 지불하는 국제 운수 비용에 대해 금융기구를 통하여 결산해야 하고 위탁자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화물 운수 대리 용역에 관한 수입에 대해서만 위탁자에게 증치세 보통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면세 혜택은 2013 년 8 월 1 일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전용 영수증을 회수한 뒤에야 증치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딜로이트의 의견

국제 운수 용역은 보통 영세율이나 증치세 면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용역을 종사하는 일반납세의무자는 구입한 국제 운수 서비스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증치세 조세부담은 주로 매출세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3 년 8 월 1 일 전에 국제 운수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들이 106 호 문건에 제시된 혜택(즉 대외 지불 하는 일부 비용을 조세 기초 중에서 제외한 후 증치세를 계산하는 정책)을 누릴 수 있지만 37 호 문건은 해당 혜택을 취소했고 납세자들이 국제 운수 대리 용역에 대해 전부 가격을 과세 기초로 하여 증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국제 운수 영역의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으며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용역의 납세자들은 고객들에게 조세부담을 이전시키는 상황이 발행해 왔습니다. 이에 106 호 문건은 다시 운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37 호 문건이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용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화물 운수 대리 납세자들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국제 기업 집단계열사 간에는 상당히 빈번한 내부적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손익분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용역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안분이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구를 통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면세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우편 및 택배 서비스

### A. 우편 용역

새롭게 증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된 과세 업종으로서 우편 용역에 11%의 증치세 세율에 적용됩니다. 106 호 문건은 우정 용역을 중국우정집단공사 및 계열 우정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용역(예를 들어 우편 운송, 우정 우체 등)으로 정의합니다.

## B. 택배 서비스

106 호 문건은 “일부 현대 서비스-----물류 협조 서비스” 과세 자목 아래 “택배 서비스” 자목을 새롭게 증가하였고 6%의 세율로 증치세 납세 범위에서 포함시켰습니다. 택배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용역: 발송인에게서 편지나 소포를 수취하여 용역 제공자가 소재하는 도시의 배달 센터에 운송하는 용역;
- 분류 용역: 배달 센터에서 우편물을 분류시키는 용역;
- 배달 용역: 배달 센터에서 우편물을 같은 지역의 접수인에게 택배하는 용역.

### 딜로이트의 의견

영업세 조세 체계 아래 택배 용역은 우편 용역에 해당되었으며 3%의 영업세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 적용시 택배 용역은 운수 용역을 비롯한 기타 용역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 당국이 서로 다른 과세 조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증치세 개혁 정책이 실시된 후 일부 택배 기업들이 계속 3%의 영업세 세율로 우편통신 업종으로 영업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고 일부는 11%의 증치세 개혁 세율로 교통운수 업종으로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혹은 6%의 세율로 물류 업종으로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06 호 문건의 우표서비스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중국우정집단 및 계열사에 해당되지 않은 택배 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은 증치세 개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특히 다른 지역간의 택배 용역)은 완전히 이번 새로 증가한 택배 용역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간의 택배 용역을 교통 운수 용역(11% 세율 허용)과 택배 용역(6% 증치세율 허용)의 결합으로 인정할 경우 실무가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택배 용역의 과세 자목에 대한 인정 및 실무 적용 요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역외 용역 아웃소싱

106 호 문건에 의하면 역외 용역 아웃소싱 용역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전국 범위에 확장되어 전면적으로 증치세 면세 혜택 정책에 허용될 예정이고 실시 마감일은 2013 년 12 월 31 일에서 2018 년 12 월 31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16 호 문건 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외 용역 아웃소싱 업무 종류를 상세히 열거했고 실무 조작 중 역외 용역 범위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제 운수 용역에 관한 항로 용선 임대, 기간 용선 임대 및 웨트 리스 등 용역

경내 단체 혹은 개인이 항로 용선 임대, 기간 용선 임대 및 웨트 리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하는 교통편이 국제(홍콩, 마카오 및 대만 포함) 운수 용역에 사용되고 해당 신청 단체 혹은 개인이 일반납세의무자

자격 및 국제 운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영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6호 문건은 상기 영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체(즉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을 했으며 이는 2013년 8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106호 문건에서의 신청자	37호 문건에서의 신청자
항로 용선 임대	대출자	임차인
기간 용선 임대 혹은 웨트 리스 -임차인이 경내 단체 혹은 개인인 경우	임차인 (해당 교통편을 이용하여 기타 단체 혹은 개인에게 국제 운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
기간 용선 임대 혹은 웨트 리스 -임차인이 경외 단체 혹은 개인인 경우	대출자	임차인

## 기타

### A. 새로 증가한 과세 용역 항목

106 호 문건은 과세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동시에 일부 증치세 개혁 정책이 적용되는 과세 사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과세 용역(증치세율)		새로 증가한 과세 사항
교통 운수 용역	육로 운수 용역(11%)	철도 운수 용역
	항공 운수 용역(11%)	항공 운수 용역(항공기 발사 용역 )
우편 용역	우편 보통 용역(11%)	우편 배송, 우표 발행, 간행물 발행, 우편 위체, 우편물 판매 등
	우편 특수 용역(11%)	
	기타 우편 용역(11%)	
일부 현대 서비스 용역	연구개발 및 기술 용역(6%)	기술 자문 용역--기술 테스트, 기술 교육
	정보 기술 용역(6%)	업무 절차 관리 용역---감사 관리, 세무 관리, 내부적 데이터 검색, 내부적 데이터 관리 및 내부적 데이터 이용
	문화 창의 용역(6%)	디자인 용역-인터넷 게임 디자인
	물류 협조 용역(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용역-항공 교육</li> <li>• 운송센터 용역-화물 포장 용역, 철도 관련 용역 등</li> <li>• 택배 용역</li> </ul>
	검증 자문 용역(6%)	자문 용역-번역 용역

### B. 수입 공제 사항

#### i. 증명서류

106 호 문건이 일부 업종의 납세자가 전체 가격 및 부가 비용에서 일부 열거된 비용을 공제하여 증치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예를 들어 국제화물운송대리, 여객운송 용역) 구체적인 공제사항 및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내 단체 혹은 개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
- 경외 단체 혹은 개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혹은 개인이 수령한 후 사인한 서류. 세무기관이 질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외 단체 혹은 개인한테 공정 서류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정부 기금 혹은 행정적 비용 등 지출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납세필증 및 재정적 증명서

ii. 2013 년 8 월 1 일 전의 허용된 공제 사항에 대한 과도기적 규정

2013 년 8 월 1 일 전에 증치세 개혁 지역<sup>5</sup>에서의 납세자들은 규정에 의해 공제한 후의 잔금을 판매액으로 하는 경우, 예전 아직 공제하지 않는 부분은 2014 년 6 월 30 일까지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2013 년 8 월 1 일 전에 발급된 증명서류에 의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 간이 과세 방법

106 호 문건은 일반납세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간이 과세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항(즉 세금 불포함가격의 3%의 세율로 증치세액을 계산하는 동시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을 열거했습니다:

- 영화 방송 용역
- 창고 용역
- 하역 운송 용역
- 택배 용역
- 애니메이션 기업이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용역(디자인, 더빙, 경내 저작권 양도 등) 2017 년 12 월 31 일부터 실시 예정

### D. 납세 신고

업무가 고정되는 납세자에 있어서는 본사와 지사가 같은 현(시)에 있지 않지만 같은 성(자치구역,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 있는 경우, 성(자치구역,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국)과 국세총국의 승인을 받으면 지사의 수입을 본사에게 모아 본사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게 증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평론

새로 발표된 증치세 개혁 문건으로서 106 호 문건은 수 많은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증치세 개혁 무대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규정은 즉시 실시될 예정이니 해당 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아래 조치를 취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 기업 자체의 생산, 경영 및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여 106 호 문건이 자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문건이 현행 정책에 대한 조정 부분을 주목합니다;
- 106 호 문건에 언급된 새로운 규정을 알아보고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합니다;

<sup>5</sup> 개혁 지역은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복건성, 호북성 및 광둥성 등을 포함합니다.

- 세무 기관과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협상하여 확인합니다;
- 후속 정책 및 전개 추이를 주목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본기 세무 평론 내용은 딜로이트 간접세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안내문은 딜로이트가 중국 내륙 및 홍콩의 고객사와 직원을 위하여 작성한 내용으로서 일반 참고용으로만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행동을 취하기전 세무자문가의 전문의견에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평론에 관한 자료 혹은 기타 세무 분석과 의견이 필요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Korean Service Group in Shanghai

### 徐祖明 파트너

Jeff, Xu

Tel: +86 21 6141 1278

Email: [jexu@deloitte.com.cn](mailto:jexu@deloitte.com.cn)

### 함지원 이사

Ham Jiwon

Tel: +86 21 6141 1468

Email: [jiham@deloitte.com.cn](mailto:jiham@deloitte.com.cn)

### 최근호 이사

Choi Gun Ho

Tel: +86 21 2316 6237

Email: [guchoi@deloitte.com.cn](mailto:guchoi@deloitte.com.cn)